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경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099 발의연월일: 2021. 11. 3.

발 의 자:김경만・고영인・고용진

김성주 · 김수흥 · 김승원

김영주 · 김정호 · 김진표

김태년 · 김홍걸 · 박상혁

서영석 · 신정훈 · 우상호

유관석 • 유준병 • 임종성

홍기원 의원(19인)

제안이유

최근 원유, 철광석, 펄프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.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,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해 2020년 말 대비 올해 공급원가가 26.4%나 상승했음에도, 이를 납품대금에 전부 반영한 중소기업은 6.2%에 불과함.

이처럼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'납품대금 조정제도'를 두고 있으나,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, 거래단절을 우려한 중소기업 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.

따라서 원자재 비중이 높은 물품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원자재 기준

가격 및 납품대금 조정 방법을 기재한 표준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, 거래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원자재 가격과 납품대금을 연동하여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공정한 시 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납품대금에서 원자재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, 위탁기업은 주요 원자재 기준가격을 정하고,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방법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함(안 제21조제2항 신설).
- 나.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거래하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약정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도록 함(안 제21조제3항 신설).
- 다. 원자재 기준가격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상승하는 경우, 위탁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함 (안 제22조제7항 신설).
- 라.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(안 제22조제8항신설 및 제43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물품등의 납품대금에서 원자재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, 위탁기업은 주요 원자재 기준가격 을 정하고,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방법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정서에 기재하여야 한다.
-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거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표준약정 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.

제22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제21조제2항의 약정서로 정한 바에 따라 원자재 기준가격이 100 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상승하는 경우, 위탁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
-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

한 경우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.

제43조제1항 중 "제34조제3항에"를 "제22조제7항 및 제34조제3항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		개 정 안
제21조(약정서의	발급)	1	(생	제21조(약정서의 발급) ① (현행
략)				과 같음)
<u><신 설></u>				② 물품등의 납품대금에서 원
				자재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
			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
				<u>상인 경우, 위탁기업은 주요 원</u>
				자재 기준가격을 정하고, 원자
				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
				의 조정 방법을 대통령령으로
				정하는 바에 따라 약정서에 기
				재하여야 한다.
<u><신 설></u>				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
				기업과 수탁기업이 대등한 입
				장에서 공정하게 거래하도록
				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
				관한 표준약정서의 작성 및 사
				용을 권장하여야 한다.
② (생략)				<u>④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
제22조(납품대금의	지급	등)	1	제22조(납품대금의 지급 등) ①
~ ⑥ (생 략)				~ ⑥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			⑦ 제21조제2항의 약정서로 정
				한 바에 따라 원자재 기준가격
				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

<신 설>

제43조(과태료) ① <u>제34조제3항에</u>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.

② ~ ④ (생 략)

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상승하는 경우, 위탁기업은 원 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납품대금에 반 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

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 항에 따른 납품대금을 지급하 지 아니한 경우 그 이행을 명 할 수 있다.

제43조(과태료) ① <u>제22조제7항</u> <u>및 제34조제3항에</u>-----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